

아이돌봄서비스¹⁾

1. 사업 목적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아동의 안전한 보호



영아 및 방과 후 아동 돌봄

개별 가정 특성 및 아동발달을 고려하여 아동의 집에서 돌봄 서비스 제공

부모의 일·가정 양립



취업 부모

야간·주말 등 통새시간 '일시 돌봄' 및 '영아종일돌봄' 등 수요자가 원하는 서비스 확충

돌봄 자원 창출



아이돌보미

육아·돌봄 의사가 있는 여성에게 교육지원과 능력개발을 제공하여 사회서비스 수요와 연계 활성화

2. 사업 설명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자 만들어졌습니다.

3. 법적 근거

법령: 아이돌봄지원법

지침: 아이돌봄 지원사업 사업지침

4. 사업현황

-이용자 현황



1) <https://www.idolbom.go.kr/front/main/main.do>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pdf 파일 2020 아동돌봄 안내서

-아이돌봄미 현황 (단위:명)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17,553	19,377	20,878	23,675	24,677

-서비스 제공기관 현황(2020년 1월 기준, 단위:개소)

계	건강-다가 통합센터	건강가정 지원센터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여성단체 여성인력	지자체 직영	사회 복지관	자활센터	기타
223	140	19	8	10	13	7	5	21

※ (서비스제공기관) 223개소 중 건강(건강가정지원센터)-다가(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74.9%로 가장 많음

※ 기타 : YWCA/YMCA(2개소), 산학협력단(2개소), 협동조합(1개소), 사회복지법인 등(16개소)

5. 아동돌봄서비스 종류 및 돌봄 대상

- 1) 영아종일제서비스: 만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영아
- 2) 시간제서비스: 만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일반형 및 종합형으로 구분)
- 3)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법정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만 12세 이하의 시설 이용 아동
- 4) 기관연계서비스: 사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등의 만0세~12세 아동

6. 정부지원 대상

- 1) 지원기준: 소득기준에 따른 가구 유형별로 차등하여 정부지원을 적용
- 2) 가구유형
 - 가~다형: 양육공백²⁾이 발생하는 가정 중에서 기준 중위소득이 150% 이하인 가구
 - 리형: 양육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가정(전업주부 등) 또는 기준 중위소득이 150%를 초과하는 가구

(*가구유형 판정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액 기준으로 월 평균 가구소득 금액 산정, 맞벌이 소득 25% 감경)

< 가구원수별 소득기준 >

유형	소득기준 (중위소득)	가구원수별 소득기준 금액(월평균 소득)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가형	75% 이하	2,902,933원	3,561,881원	4,220,828원	4,879,776원	5,542,286원	6,204,797원
나형	120% 이하	4,644,692원	5,699,009원	6,753,325원	7,807,642원	8,867,658원	9,927,674원
다형	150% 이하	5,805,866원	7,123,761원	8,441,657원	9,759,552원	11,084,573원	12,409,593원

* (서비스별 이용요금) [붙임1] 2020년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 산정표 참조

2) 양육공백: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장애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정(학업, 질병, 취업준비) 등

7. 서비스 비용

* 정부지원 시간: 영아종일제 월 60시간~200시간 이내 / 시간제 연 720시간 이내

* 정부지원 시간 초과 시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

1. 영아종일제 돌봄(시간당 요금 9,890원)

(단위 : 원)

아동 인원	소득유형	평일 주간			심야, 휴일		
		30분당 이용요금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30분당 이용요금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1명	가형	4,945	3,956	989	7,420	3,956	989
	나형		2,967	1,978		2,967	1,978
	다형		742	4,203		742	4,203
	라형		-	4,945		-	4,945

2. 시간제 돌봄 A형(2013.1.1. 이후 출생 아동, 시간당 기본요금 9,890원)

(단위 : 원)

아동 인원	소득유형	평일 주간			심야, 휴일		
		30분당 이용요금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30분당 이용요금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1명	가형	4,945	4,204	741	7,420	6,307	1,113
	나형		2,720	2,225		4,081	3,339
	다형		742	4,203		1,113	6,307
	라형		-	4,945		-	7,420

3. 시간제 돌봄 B형(2012.12.31. 이전 출생 아동, 시간당 기본요금 9,890원)

(단위 : 원)

아동 인원	소득유형	평일 주간			심야, 휴일		
		30분당 이용요금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30분당 이용요금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1명	가형	4,945	3,709	1,236	7,420	5,565	1,855
	나형		989	3,956		1,484	5,936
	다형		742	4,203		1,113	6,307
	라형		-	4,945		-	7,420

4. 종합형 돌봄 A형(2013.1.1. 이후 출생 아동, 시간당 기본요금 12,860원)

(단위 : 원)

아동 인원	소득유형	평일 주간			심야, 휴일		
		30분당 이용요금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30분당 이용요금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1명	가형	6,430	4,204	2,226	9,645	6,307	3,338
	나형		2,720	3,710		4,081	5,564
	다형		742	5,688		1,113	8,532
	라형		-	6,430		-	9,645

5. 종합형 돌봄 B형(2013.1.1. 이후 출생 아동, 시간당 기본요금 12,860원)

(단위 : 원)

아동 인원	소득유형	평일 주간			심야, 휴일		
		30분당 이용요금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30분당 이용요금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1명	가형	6,430	3,709	2,721	9,645	5,565	4,080
	나형		989	5,441		1,484	8,161
	다형		742	5,688		1,113	8,532
	라형		-	6,430		-	9,645

6. 질병감염아동지원 A형(2013.1.1. 이후 출생 아동, 시간당 기본요금 11,860원)

(단위 : 원)

아동 인원	소득유형	평일 주간			심야, 휴일		
		30분당 이용요금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30분당 이용요금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1명	가형	5,930	5,041	889	8,895	7,561	1,334
	나형		3,262	2,668		4,893	4,002
	다형		2,965	2,965		4,448	4,447
	라형		2,965	2,965		4,448	4,447

7. 질병감염아동지원 B형(2012.12.31. 이전 출생 아동, 시간당 기본요금 11,860원)

(단위 : 원)

아동 인원	소득유형	평일 주간			심야, 휴일		
		30분당 이용요금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30분당 이용요금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1명	가형	5,930	4,448	1,482	8,895	6,672	2,223
	나형		2,965	2,965		4,448	4,447
	다형		2,965	2,965		4,448	4,447
	라형		2,965	2,965		4,448	4,447

8. 지원 내용

1) 영아종일제: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생후 3개월 이상~만 36개월 이하)

2) 시간제 (생후 3개월 이상~만12세 이하)

- 일반형: 학교, 보육시설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일반 가사 활동은 불가) 돌봄 대상 아동의 관찰사항(일상생활, 아동발달, 건강, 특이사항) 등을 매일 이용가정에 구두 또는 수첩, 서면, 통화, 문자메시지 등 통해 전달

- 종합형: 일반형의 돌봄 활동 범위 포함, 아동과 관련한 가사 활동(아동 관련 세탁물 돌리기, 정리, 청소, 걸레질, 아동 식사 및 간식 조리, 설거지)

3)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질병 아동의 병원 이용 동행 및 재가 돌봄 서비스 제공, 돌봄 대상 건강, 아동의 질병과 관련된 특이사항 등을 매일 이용가정에 구두 또는 수첩, 서면, 통화, 문자메시지 등 통해 전달

* 질병감염아동을 돌본 아이돌보미는 당일 다른 가정의 돌봄 활동 불가

* 입원한 아동에 대해 병원 내 돌봄 서비스 제공 불가

* 생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영아에게 서비스 제공 가능. 단, 서비스제공기관은 사고 등 발생 가능성이 높음에 대한 이용자 가정의 확인을 계약서에 별도로 명시해야 함.

6. 신청 방법

- 1) '가~다' 형: 시군구청으로부터 정부지원 결정 통보를 받고, 홈페이지에 가입 및 희망 서비스 신청
- 2) '라' 형: 정부지원 결정 절차 없이 바로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및 희망 서비스 신청

9. 사전 준비: 국민행복카드 발급, 아이돌봄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서비스 신청

10. 서비스 신청시 유의사항

1) 정부지원 중복금지 기준 사항

- 영아종일제서비스: 보육료 및 유아학비, 양육수당(농어촌 양육수당 포함), 아이돌봄서비스 시간제 정부지원을 받는 아동.
- 시간제서비스: 보육료 및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의 경우 보육시설 및 유치원 이용시간(종일제, 반일제, 시간연장제)에는 아이돌봄서비스 시간제 정부지원 불가
- * 보육시설: 평일 09~16시 / 유치원: 평일 09~13시 / 보육시설 및 유치원의 주말, 시간 연장제 등 실이용 시간

2) 중복금지 기준 예외

- 유치원 및 보육시설 휴원 등으로 시설의 미운영, 탄력적 운영
- 질병감염 또는 아동사고의 사유로 유치원 및 보육시설 미이용
- 자녀양육에 대한 다른 정부지원을 받는 경우에도 아이돌봄서비스 요금 전액을 본인이 부담 할 시에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3) 이용 안내사항

- 면접: 이용자는 원하는 경우 신청 가구당 서비스 연계 시까지 최대 월 2회 아이돌보미 면접 가능(회당 12,000원의 면접비를 아이돌보미에게 지급하여야 함)
- 서비스 장소: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정 또는 기관이 원칙
(단, 합의시 돌보미 가정 등에서도 가능하며 서비스 제공기관에 반드시 고지)
- 서비스 범위: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돌봄을 위한 서비스
- 정기이용신청: 저월 별도 공지일에 월 정기이용 신청
- 일시연계신청: 서비스 이용 3일 전부터 서비스 시작 4시간 전까지 신청 가능(모바일 앱 설치 필수)
- 서비스 종료 시간 엄수
- 서비스 종료 시 보호자가 아동을 인계받도록 해야 함

4) 돌봄아동추가 기준

- 동일 시간대에 형제자매 돌봄 추가 시 할인율 적용
: 2명(25% 감액), 3명(33.3% 감액)
- 36개월 미만 영아 포함 시 아이돌보미가 최대 2명, 36개월 미만 영아 미포함시 최대 3명 돌봄 가능. 협의.

9. 아이돌보미 선발 및 양성 과정

- 1)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수료자(최초 신청자는 면접 후 이론 80시간, 실습 20시간 교육 수료)
-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 유아교육법에 따른 교사,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사,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자격증 소유자
- 3) 인적성 검사
- 4) 면접심사: 심사위원 구성-보육 관련 전문가, 아동학대 예방 또는 심리 전문가, 기자체 담당 공무원, 서비스 제공기관 담당자
- 5) 보수교육: 연 16시간 진행
- 6) 활동 수당
 - 돌봄수당(기본시급) : 8,600원 (법정 제수당 지급)
 - 아이돌봄서비스 종류 및 아동 수에 따른 지급 기준
: 시간제서비스 종합형(2,970원), 질병감염아동서비스(2,600원), 기관연계서비스(6,850원), 아동 추가(2명-4,300원/3명-8,600원)을 기본시급에 가산하여 지급
 - 명절상여금 연 20만원(1회 10만원) 지급